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3-172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1.

발 의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안 제2조 제1호 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제1호 중 “**마포구미래교육지구**”를 “**마포구 미래교육지구**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마포구미래교육지구**”를 “**마포구 미래교육지구**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학생”</u>이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(이하 “마포구”</u> <u>라 한다) 소재 초·</u> <u>중·고등학교에 재</u> <u>학 중인 학생 및 해</u> <u>당 연령의 청소년을</u> <u>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마포구미래교육</u> <u>지구”</u> (이하 “미 래교육지구” 라 한 다)란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“교 육감” 이라 한다) 이 미래교육지구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마포구 미래교</u> <u>육지구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[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]